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539664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2016. 12. 16.

판결 선고2017. 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309,387원 및 그 중 45,289,047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5,289,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② 원고와 피고 B, D, E,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③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를 통하여 2013. 3. 8.

피고 A과 사이에 농협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종속채무(지연손해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② 보증료 등 :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름

(2) 피고 A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2014. 9. 4. 농협은행과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5. 농협은행에게 보증원금 45,000,000원, 이자 289,047원 등 합계 45,289,0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손해금 납부와 관리기관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관리기관이 정한 위약금은 피보증인인 피고 A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위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5. 3. 24.까지 15일간의 미이행금 45,000,000원에 대한 위약금(미수추가보증료)을 산정하면 20,340원(= 45,000,000원 × 11/1,000 × 15/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4)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5) 원고는 2015. 3. 25.을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하여 45,309,387원(= 대위변제금 45,289,047원 + 위약금 20,3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289,0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G를 제외한 피고들 및 망 H의 사기범행의 공모와 실행

(1) 피고 C·D·E·F 및 망 H 등은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원고가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A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의사도 없음에도, 대출사기단의 총책인 피고 C, 임차인 유인책인 망 H, 임대인 유인책인 피고 D, 허위 재직 관련 자료를 작성해줄 회사 유인책인 피고 E,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해줄 피고 F 및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줄 피고 B와 공모하여,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제107동 제106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된 재직 관련 서류를 농협은행에 제출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3. 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3. 8.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5. 3. 25. 농협은행에게 피고 A이 연체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위 사기범행 등으로,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에서 2015. 3.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2)에서 2015. 12.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670 등)에서 2014. 10. 16.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D는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670 등)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E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2014노3060)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 F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612)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망 H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 H은 2014. 1. 4. 사망하였고, 그 아버지인 피고 G가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농협은행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2015. 3. 25. 농협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 등으로 45,289,047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의 합계 45,309,387원(= 대위변제금 45,289,047원 + 위약금 20,3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289,04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최종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 F 및 망 H은 피고 A과 공모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2015. 3. 25. 농협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 등으로 45,289,047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고, 대위변제일인 2015. 3. 25.경 농협은행이 피고 B, C, D, E, F 및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G에 대하여 보유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B, C, D, E, F, G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기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5,289,0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날인 2015. 3. 25.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26.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최종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석문